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 보고서

1993. 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1993. 11. 24
- 제안자 : 남구청장

나. 회부일자

- 총무위원회 : 1993. 11. 2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 12. 1

다. 상정일자

- 총무위원회(1993.11.29) :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제1차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 : " 예결특위 제2차회의

2. 제안 이유

- 1992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

3. 제안설명 주요골자 (제안설명: 재무과장 유용현)

- 예비비 예산액 : 254,119천원
- 지출 결정액 : 131,810천원 (9건)
- 지출액 : 123,447천원
- 불용액 : 8,363천원
- 예비비 잔액 : 122,309천원

4. 검토 의견(전문위원 김용득)

○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지출 금액	지 출 액	불 용 액	비 고
계	131,810	123,447	8,363	
운수행정지도	5,911	4,648	1,263	
재해 대책	34,500	32,300	2,200	
민원 업무	5,400	5,400	0	
방범 활동	4,434	4,434	0	
영세민 보호	3,553	3,553	0	
건축 지도	4,900	0	4,900	
인사고시관리	67,368	67,368	0	
공무원교육원	5,744	5,744	0	

○ 예비비 지출 내용별 검토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지출액	불용액	검 토 내 용
	계	123,447	8,363	
1	공영주차장 관리인부 1월분 인부임	4,648	1,263	주차관리공단 설립 지역에 따른 관리 인부임 1월분 미계상으로서 적정함.
2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및 설계 용역	27,800	2,200	재해위험지 안전 진단 및 설계용역비 로 편성 및 지출 기준에 적정함.
3	재해위험지 정비 공사	4,500	0	재해위험지 공사 구비 부담분 적정함.
4	친절 봉사 100일 추진 운동 시책	5,400	0	직소민원 전화 설치 등 소요시설 개선 비용으로 적정함.
5	방범원 정액 수당 지급	4,434	0	방범원 인건비등 학비 보조 수당 적정함.

연번	사업명	지출액	불용액	검토 내용
6	영세민 전세 자금 지원 협약금	3,553	0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협약에 따른 이자 보전액 납부로서 적정함
7	무허가 건물 철거 용역	0	4,900	강제 철거 용역비, 집행사유 불가로 인한 미집행
8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공상진료비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67,368	0	인건비 및 복리후생적 필요 경비임.
9	공무원 교육 여비 지급	5,744	0	하반기 공무원 중앙교육증가에 따른 여비이나 예비비 지출 기준에 부합 여부 검토 필요

가.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은 적정 사용되었음.

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로서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또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이거나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경우에 지출해야 하는 지출의 특례 과목임은 주지의 사실임.

다. 위 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과 지출에 있어 관련 근거, 사용 목적, 배경 등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는 과목임을 항상 명심할 것임.

라.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결산 검사시 지적된바와 같이 하반기 중앙공무원 교육 여비 지급등과 같이 추경 편성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한 재발이 없도록 각별 유의할 것등이 요구됨.

5. 질의,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병화 위 원	기획감사 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결산서 142페이지 불용액은 112,309천원이고 161페이지 불용액은 8,363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 나는 이유는? ○ 예비비 지출이 연순에 지출 이 많이 되었는데 본 예산 에 넣어서 쓸 수 있는 대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치상의 차이는 없으며 142페이지 불용액 112,309 천원은 예비비 예산 254,169 천원에서 지출결정액 131,810 천원을 뺀 금액이며, 161페 이지의 불용액 8,363천원은 지출 결정을 한 금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임. ○ 당초 계획을 충실히 세워 가능한 한 예비비 지출을 억제도록 하겠음.

6. 토론 요지 : 없음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과 같이 승인(의결)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